

판 결

사 건
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범의주

피 고 인

검 사

변 호 인

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조효동

판 결 선 고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.